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사항

1. 피고는

가.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 가로세로연구소채널 방송의 말미에 별지2 기재와 같은 보도문을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위 보도문이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되도록 방송영상을 제작하여 게재하며, 이후 피고의 이 사건 2020. 7. 8.자 및 2020. 10. 20.자 각 방송이 일반에게 검색, 송출되는 경우에는 해당방송 말미에 별지2 기재 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10초 동안 표시되도록 첨부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 위 각 방송영상과 함께 나타나도록 한다.

나. 피고가 전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매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다. 원고들에게 5,000,000원을 2025. 3.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금원지급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202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정서

2024. 12. 23.

재판장 판사 문광섭



 판사 최성보



 판사 이준현



※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별지 2

청구하는 정정보도문

[정정보도문]

제목: 2020. 7. 8. 자 유튜브 방송 정정보도 관련

본 유튜브 채널은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이 이루어진 직후에 진행된 이 사건 방송에서 정부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비상장 기업 회사채 등에 투자해 5,000 억원대 피해가 예상되는 이른바 ‘옵티머스 사태’의 관련자로서 핵심인물로 이혁진을 지목하고, 이혁진에 대하여 집중 소개함으로써 이혁진이 옵티머스 사태의 주요 인물에 해당함을 암시하고, 이혁진이 일부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친분관계가 있고, 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재직할 임종석과 한양대 86 학번 동기라는 점을 근거로 옵티머스 사태가 이혁진과 당시 여권 인사 간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혁진은 옵티머스 사태가 시작된 계기인 전과진흥원의 투자 유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 대표이사직에서 이미 사퇴하였으며, 오히려 옵티머스 사태의 주범인 김재원 등에게 경영권을 빼앗긴 후, 해당 사태를 막기 위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준법감시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한 자였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

결과적으로 이혁진이 옵티머스 사태를 발생시킨 주범이 아니고, 이에 따라 해당 사태가 이혁진과 당시 여권의 유착관계를 통하여 발생한 권력형 비리 또한 아니라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열린답응